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의견 조회

1. 관련근거: 「약사법」 제2조(정의) 제19호,
제83조의4(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 구축)

2.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다음 의약품에 대하여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,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가. 질병 관리,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나.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

3. 이와 관련하여, 우리 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(성분·제형), ②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의 적용범위 반영 필요한 의약품 등에 대한 관계 전문협회·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
4. 귀 협회·단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'26.11.13.(금)까지 우리 처(의약품관리지원팀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전자 우편: sjbae1228@korea.kr
* 우편: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의약품관리지원팀 (우)28159

붙임 1.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현황 1부.
2.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청서(서식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사단법인 대한약사회, (사)한국병원약사회

행정주사	**배순정**	사무관	**강은빈**	의약품관리지원 전결 2026. 10. 23. 팀장	**권혁승**

협조자

시행 의약품관리지원팀-5251 (2026. 10. 23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819 팩스번호 043-719-2820 / sjbae1228@korea.kr / 비공개(5,7)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